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3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윤후덕·박홍배·김정호

정준호 • 박희승 • 이훈기

이연희 · 정성호 · 박 정

이병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생 략)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	2		
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			
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			
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			
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